

판 결

사 건 [redacted] 건물인도

원 고

1.

[redacted]

[redacted]

2.

[redacted]

[redacted]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

담당변호사

[redacted]

피 고

[redacted]

[redacted]

변 론 종 결

[redacted]

판 결 선 고

[redacted]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 [redacted]에게,

가.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

나. 14,5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[redacted]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
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
다. [redacted]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,65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피고는 원고 [redacted]에게,

가.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

나. 75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[redacted]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
다. [redacted]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,43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4. 제1항,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